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30

수 원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구단11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 고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장

변 론 종 결 2016. 4. 6.

판 결 선 고 2016. 4. 27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3. 4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,746,540원, 지방교육세 3,491,650원, 농특세 1,887,320원 합계 43,125,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.

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2016. 3. 14.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. 행정처분이 취소되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30

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, 이미 효력이 없어진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강대